삼정 KPMG

MONTHLY NEWSLETTER
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뉴스레터

July. 31, 2020

In this Issue

Ⅰ. Law & Regulation
Ⅱ. Expert Reports
Ⅲ. News
Ⅳ. Events

Key Contacts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월간 뉴스레터에서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최신 이슈, 국내외 최신 동향, 법령 및 감독당국 소식, 전문가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의 원본이 있는 경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Ⅰ. Law & Regulation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안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0.7.3]

1. 개정 이유

- 분·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용역 계약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기준을 정비하는 등 공시정보 활용도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부감사법 관련 항목의 작성기준 명확화

- 분·반기보고서에 감사계약내역을 병기하고,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간 논의사항'에 대한 공시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개선
  - ➢ 관련조문: 제 5-2-1 조(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나. 주권상장법인특례 공시의 활용도 제고

- 정기보고서에 사외이사의 선임·해임·중도퇴임 등 변동 현황 및 당기에 행사·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정보를 제공
  - ➢ 관련조문: 제 7-1-1 조(이사회 구성 개요), 제 9-2-2 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3. 시행시기

-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

코로나 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금융위원회, 2020.7.15]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3월 25일, 5월 6일) 면제**하였음
  * (사업보고서) 상장 35사, 비상장 11사, (1분기보고서) 상장 21사, 비상장 2사 ※ 7사 중복신청
- **제재를 면제받은 62사 모두**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 다만, 이중 3 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되어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 미국은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4월 16일)하였으나 확진자 증가로 16개 州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중단(6월 30일)하였으며, 인도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1개월 연장(6일 29일)

- **분 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8월 14일)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됨

	12월 결산 법인 (상장법인: 2,298개)	**3월 결산법인** (상장법인: 24개)	**9월 결산법인** (상장법인: 6개)
2020년 6월	(반기 결산)	(분기 결산)	(분기 결산)
	↓	↓	↓
2020년 8월 14일	반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3. 처리 방안

[1] 기본 방향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법인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

[2] 처리 절차

- ① **신청(**7월 20일 ~ 7월 24일)→② **검토(금융감독원)**→③ **증선위 의결**(8월 5일)
- ①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8월 1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

>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
> - **검토기관**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 - **신청대상 및 방법**
>
> ① **반기보고서: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
> * 회사 신청시 감사인의 의견서,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첨부
>
> ②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
> * 회사 신청시 감사인의 의견서,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첨부
>
> ③ **자산 5 천억원 미만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 회사**가 신청

- ②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

>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요건>**
>
> **(1) 3월, 9월, 12월 결산법인**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
>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일괄심사 후 제재면제대상 아님)

- **③ 증선위 의결**

  8월 5일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월 14일까지(30일 연장)*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 28일까지 제출

➢ **한국거래소**는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재추진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2020.6.23]

1. 개정 이유

- 6월 23일(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임원 선임의 투명성·독립성 제고**

-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 금지 등
-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

②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 보수위·임추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他위원회 겸직 제한
-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내부감사책임자")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토록 함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

③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 **임원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 부과:**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

④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주기적 적격성 심사) 합리화**

-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추가

-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개정 안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0.7.22]

1. 개정 이유

- 2012년 개정 이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반영해야 할 사항 및 실무상 개선필요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기타 설명 문구를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이사회 부의사항 관련 보완사항(제11조)

- '이사·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의 보수 총액 및 **개별 이사의 보수 범위**를 결의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에 위임 가능
  * 감사의 보수는 독립성 유지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감법 전부개정(2018년 3월 20일)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를 신설
- 회사 업종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필요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

▲ Back to top

Ⅱ. Expert Reports

2020 Who Operates KSOX Program? 2nd Surve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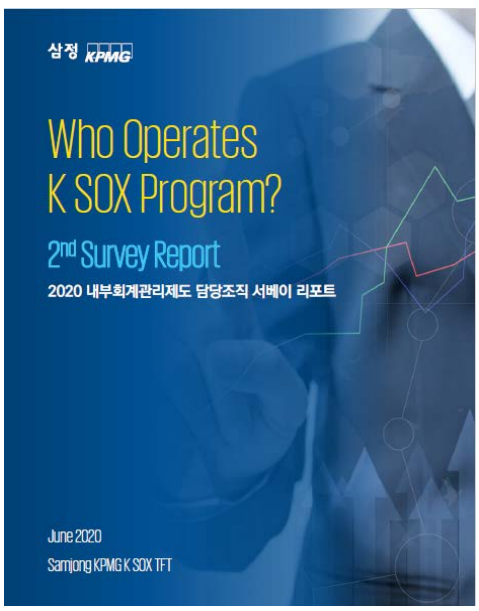

이번 2020 Who Operates KSOX Program? 2nd Survey Report는 206개사(자산 2조원 이상 126개사,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80개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분석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 ICFR 운영 및 평가 조직 관련 법규, 경영진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조직, 감사(위원회) 감독을 위한 조직과 ICFR 평가 아웃소싱에 관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Directors Quarterly: July 2020

이번 Directors Quarterly: July 2020는 COVID-19과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COVID-19이 연간 주주총회와 제안서 작성 및 계약 업무 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비 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KPMG US

▲ Back to top

Ⅲ. News

KPMG

- [삼정KPMG세미나]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75% 핵심감사사항...관건은 경영진 인식변화 [조세금융신문]
- 삼정KPMG 프로페서에 조성표·오광욱·정남철 교수 선정 [매일경제]

Internal Control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전년比 25%p 늘었다 [조세일보]
- 성공적인 '회계개혁'을 위해서 [헤럴드비즈]
- SEC's COVID-19 Supplemental Guidance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Financial Reporting [JDSUPRA]

Regulatory Issue

- Fundamentals for Compliance and Oversight in the Time of COVID-19 [CPA Practice Advisor]
- A Summary Of Recent Additional SEC Guidance on Disclosure,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Practices In Light Of COVID-19 [JDSUPRA]
- Answers to 4 common accounting and auditing questions [JOURNAL OF ACCOUNTANCY]

Corporate Governance

- 상장사 이사회 성별구성, 자율공시로 밝힌다 [이데일리]
- Accelerating Board Diversity [Forbes]

▲ Back to top

Ⅳ. Events

제6회 삼정 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ACI) 세미나

지난 7월 24일에 진행된 **제6회 ACI 웨비나(웹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감사・감사위원님 그리고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기존 이론 위주의 강연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실정과 생생한 실무 현장감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연간 주요 활동을 동영상 드라마로 구현하여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동영상 드라마와 진행된 강연을 편집하여 하기 사이트에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시간에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님과 감사님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의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드라마와 강연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드라마> 인물소개 및 전체영상(4편의 동영상 드라마 전체 이어보기) - Click

•기,起: 외부감사인 선정 (동영상 드라마+강연) – Click
•승,承: 감사계획 수립 (동영상 드라마+강연) – Click
•전,轉: KAM(핵심감사사항) 논의 (동영상 드라마+강연) – Click
•결,結: 외부감사 의견형성 (동영상 드라마+강연+Wrap up) – Click

8월 내부감사 전문교육

- **이용기간:** 2020년 8월 27일(목) ~28일(금)
- **장소:**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3층 301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9-16)
- **문의:** (이메일 문의) 교육운영팀 진가영 대리(gyjin@iiakorea.or.kr)

8/27(목) [내부감사인의 회계/재무/세무감사 실무]

Ⅰ. 내부감사 의의 및 절차(회계감사 중심)

Ⅱ. 회계감사 개요

Ⅲ. 사업이해 및 감사계획 수립

Ⅳ.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평가

Ⅴ. 계정과목별 입증절차

Ⅵ. 감사의견 형성 및 결과보고

8/28(금) [신규 감사팀원을 위한 입문교육]

Ⅰ. 감사의 역할과 업무 소개

Ⅱ. 사전조사의 의미

Ⅲ. 현장조사의 이해

Ⅳ. 보고서 작성 및 감사후속조치

Ⅴ. 계정과목별 입증절차

▲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전무이사
ACI Leader

심정훈 상무이사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강환우 이사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